

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거부 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대 상

가. 성 명: 한 성 수

나. 생년월일: 1946.09.22.

다. 소 속: (주)감정평가법인 경무

2. 처분내용

가. 종 류: 갱신등록 거부

나. 업무정지기간: '23. 10. 23. ~'25. 06. 06. 까지

다. 사 유: 감정평가법 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갱신등록 거부에 해당

2024년 1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